

# 영유아와 초등학생 자녀의 틈새돌봄 지원정책 현황

유해미 선임연구위원

영유아와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틈새보육 및 긴급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부처에서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들은 각기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서비스 연계 및 부처간 협력을 보다 강화하여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은 특히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확대 등 최근 돌봄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내실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서비스 지원내용을 살펴보았다.

## 1. 들어가며

아동돌봄의 공백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저출생 대응의 핵심 과제로서 현 정부 들어서는 유보통합의 추진과 늘봄학교 전국 확대와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제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를 세부 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3년에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방향」에서 가정내 양육지원의 일환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과 시간제보육 확충, 유보통합을 통해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상관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며, 토요일보육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도 제시된 바 있다<sup>1)</sup>. 또한 올해 6월에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는 부모들의 다양한 돌봄 수요

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돌봄서비스를 빈틈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sup>2)</sup>. 여기서는 0~11세 아동을 위한 국가가 돌보기 위한 과제의 일환으로 출·퇴근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돌봄을 촘촘하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간제보육기관은 2023년 1,030개반에서 2027년 까지 3,600개반으로 확대하고, 야간연장 및 휴일 어린이집을 확대하며, 초등자녀를 위해 방학에도 늘봄학교를 운영함과 동시에 지역사회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연계하여 방학 중에도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는 공급 확대함과 동시에 일시돌봄 및 긴급돌봄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비스 2시간 전에 신청하고 1시간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등 신청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2023).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방향. p.6.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2024).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p.12.

〈표 1〉 시간제보육 이용 및 지원시간(2024)

구분		내용
이용대상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내/외국인)
지원대상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
지원시간		월 80시간
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4천원
	지원단가	시간당 3천원
	부모부담	시간당 1천원

주: 1)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4천원)  
 2)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가 15일 이전에 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에 한해 시간제보육료를 지원하고, 16일 이후 변경신청한 경우, 당월 말일까지 시간제보육료를 지원(시간제보육 이용일과 자격책임일이 겹치는 경우 자격책임 전일까지 배우쳐 지원 가능)  
 3) (외국인아동)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에서 아동 등록 후 이용료 전액 자부담(4천원)으로 이용 가능  
 자료: 보건복지부(2024). 2024년 보육사업안내. p.300.

이처럼 촘촘한 돌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대표적인 돌봄의 공백으로 지목되는 틈새보육과 긴급돌봄을 명시하는 서비스를 위주로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sup>3)</sup>.

## 2. 돌봄 공백의 해소를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정책 현황<sup>4)</sup>

영유아와 초등자녀를 대상으로 긴급돌봄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서비스를 위주로 지원대상, 서비스 이용절차 및 방법, 타 서비스 연계 사항 등을 다루었다. 이들 서비스는 각기 지원대상 아동연령과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이 달라서 가정 내 양육가구에게 지원되는 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스, 영유아 대상의 기관 기반의 돌봄서비스와 초등학생 대상의 학교 및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서비스로 구분하여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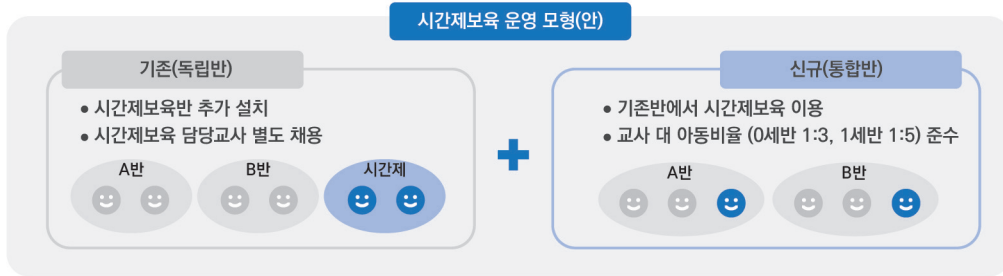
### 가. 시간제보육서비스: 영아 자녀 (6~35개월) 대상

시간제보육은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에 의거하여 가정양육 시에도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보육료를 지원받을 있는 서비스로서, 지정된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된다<sup>5)</sup>.

지원대상은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이며,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일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sup>6)</sup>.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고,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하고 운영된다. 서비스 이용비용은 월 80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당 4천원 이고, 부모는 시간당 1천원을 부담하면 된다. 단,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는 전액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sup>7)</sup>.

시간제보육은 사전 예약 및 당일 예약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시간제 이용신청서

3) 본 고에서는 부모나 지역사회 주인의 참여가 강조되는 여성가족부의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과 돌봄공동체지원사업은 논의에서 제외하였음.  
 4) 이하 원고는 「유해미·문무경·김문정(2023).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5) 6) 보건복지부(2024). 2024년 보육사업안내. p.293.



자료: 보건복지부(2022).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2023-2027). p.20.

[그림 1] 시간제보육 운영 모형(안)

및 운영규정서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이 필요하다8).

한편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는 시간제보육의 확대 및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3년부터 운영 모델을 다양화하여 단기간 또는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독립형과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2024년부터는 접근성이 뛰어난 영아 대상 가정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시간제보육 수요와 지역별 이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시간제보육의 인프라를 보다 확충할 계획이다9). 이에 앞서 복지부는 시간제보육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10).

## 나. 아이돌봄서비스: 영유아와 초등학교 자녀 대상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지원법」에 의거하여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양육 공백에 대응해 왔다11). 현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인 ‘출출한 아동돌봄체계 마련’(국정과제 46)의 일환12)으로 출·퇴근 시간대 등 돌봄 공백이 있는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13).

이하에서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일시연계 서비스와 질병감염으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기 힘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질병감염지원아동서비스를 위주로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보건복지부(2024). 2024년 보육사업안내. pp.300-301.

8) 보건복지부(2024). 2024년 보육사업안내. p.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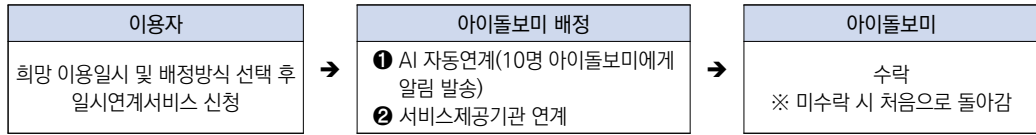
9) 보건복지부(2022).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2023-2027). p.20.

10) 보건복지부(2022). 보도참고자료(2022. 6. 16): 시간제보육 개편 시범사업 실시. p.2. (인출일자: 2023. 2. 28).

11) 여성가족부(2024). 여성가족부(2024). 2024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p.13.

12)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22).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p.87.

13) 여성가족부(2023). 2023년 주요 업무계획. p.8.



자료: 여성가족부(2024). 2024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p.58.

[그림 2] 일시연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절차

## 1) 일시연계서비스

일시연계서비스는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희망 일정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아이돌보미에게 직접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sup>14)</sup>. 아이돌봄서비스는 원칙적으로 홈페이지에서 “웹 회원” 가입 후 정회원 전환을 신청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정회원 등급으로 승인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sup>15)</sup>, 야간이나 주말 등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PC나 모바일 앱을 통해 일시적으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2)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시설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다<sup>16)</sup>. 긴급하게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서비스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 요금 전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한 후, 추후 미비 요건을 보완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다<sup>17)</sup>.

<표 2>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일반가정(2024)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시간당 13,950원)			
		A형(2017.1.1. 이후 출생)		B형(2016.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1,858원 (85%)	2,092원 (15%)	10,463원 (75%)	3,487 (25%)
나형	120% 이하	8,370원 (60%)	5,580원 (40%)	6,975원 (50%)	6,975원 (50%)
다형	150% 이하	6,975원 (50%)	6,975원 (50%)	6,975원 (50%)	6,975원 (50%)
라형	150% 초과	6,975원 (50%)	6,975원 (50%)	6,975원 (50%)	6,975원 (50%)

자료: 여성가족부(2024). 2024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p.71.

14) 여성가족부(2024). 2024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pp.57-58.

15) 여성가족부(2024). 2024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pp.52-53.

16) 여성가족부(2024). 2024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p.69.

17) 여성가족부(2024). 2024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p.70.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질병 완치 시 까지 이용할 수 있고, 이 시기에는 주말 및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 질병아동의 병원 이용 시 동행이나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단 입원아동에 대해 병원 내에서 돌봄서비스는 허용되지 않는다<sup>18)</sup>.

이용비용은 시간당 기본요금은 13,950원이나,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부모 부담금이 다르고, 야간 또는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서비스 이용 시에는 서비스 종류별로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 증액된다<sup>19)</sup>.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경우 평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유치원 이용아동의 경우 평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에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다<sup>20)</sup>. 그러나 아동의 병원 진료 등으로 인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확인한 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sup>21)</sup>.

## 다. 어린이집/유치원: 영유아 자녀 대상

어린이집에서는 기본보육시간 이후에 연장보육, 유치원에서는 누리과정 운영시간 이후에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들 기관의 이용가구에서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돌봄이 가능하다. 또한 어린이집에서는 연장보육시간 이후에도 야간 연장보육 등 그 밖의 연장보육을 제공하도록 일괄규정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지역이나 기관별로

운영시간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유보통합의 추진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시간이 변화될 수 있으므로 향후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1) 어린이집 연장보육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2020년 3월부터 모든 아동에게 오후 4시 까지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기본보육과 이후로 오후 7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된다<sup>22)</sup>. 연장보육은 유아의 경우는 필요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영아는 맞벌이 등 장시간보육에 대한 필요가 확인되어야 이용할 수 있다. 단, 연장보육의 필요 사유에는 부모의 취업이나 구직 이외에도 부모의 입원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sup>23)</sup>. 이에 따라 연장보육의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탄력편성 기준에 따라 연장반을 간헐적으로 이용하고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기본보육을 신청한 가구에서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중인 어린이집을 추가로 이용하면 된다<sup>24)</sup><sup>25)</sup>.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그 밖의 연장보육은 야간연장보육, 야간 12시간 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으로 나누어지며, 이들 서비스는 정규보육시간 이외에 추가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이용절차 이외에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은 만 0~2세반 연장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 가능), 만 3~5세

18) 여성가족부(2024). 2024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p.69.

19) 여성가족부(2024). 2024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p.71.

20) 여성가족부(2024). 2024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p.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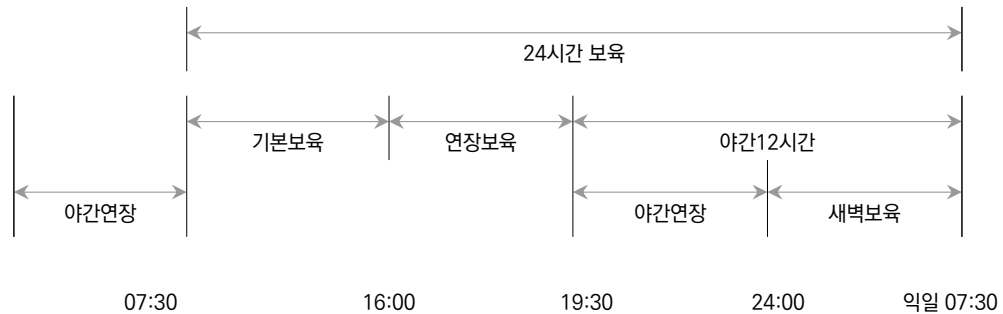
21) 여성가족부(2024). 2024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p.40.

22) 보건복지부(2019). 보도자료(2020. 9. 19): 어린이집 온종일 활기차게(인출일자: 2023. 5. 30). p.1.

23) 보건복지부(2024).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347.

24) 보건복지부(2024).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p.67-68.

25) 연장보육은 연령별 또는 연령 혼합으로 반이 편성되고, 연령 혼합 반 편성 시 영아와 유아를 구분하여 각각의 반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별 정원은 영아반의 경우 5명, 유아반의 경우 15명, 장애아 포함 시 3명이 기준이 된다(보건복지부, 2024: 68).



※ 그 밖의 연장보육: 24시간보육(기본보육 + 연장보육+야간연장보육 + 새벽보육), 야간연장보육, 야간12시간보육(야간연장 + 새벽보육), 휴일보육

자료: 보건복지부(2024).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397.

[그림 3] 어린이집 그 밖의 연장형보육 개념

반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 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한다<sup>26)</sup>. 야간연장보육 어린이집은 기존 보육시간인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을 경과하여 최대 24시 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sup>27)</sup>. 야간12시간보육 이용시간은 19시 30분부터 익일 7시30분까지이다.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취학 아동에게는 지원되지 않는다<sup>28)</sup>. 24시간보육은 7시30분부터 익일 7시30분까지 운영된다. 주간보육(07시30분~19시30분)과 야간12시간보육(19시30분~익일 7시30분)과 함께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sup>29)</sup>. 휴일보육 이용시간은 일요일과 공휴일 7시30분부터 19시30분까지이고 토요일은 제외한다<sup>30)</sup>.

## 2) 유치원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에 따른 유아 중심의 개편이 이루어졌다<sup>31)</sup>. 방과후 과정을 실수요자 위주로 운영하고 저소득가정의 유아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유치원의 99.8%에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전체 유아의 89.1%가 참여하여 이용하기에 이르렀다<sup>32)</sup>. 따라서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 이용 중인 유치원에서 추가로 돌봄을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 된다. 그러나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공립유치원에서는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사립유치원에서는 원장이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하도록

26) 보건복지부(2024).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355.

27) 보건복지부(2024).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355.

28) 보건복지부(2024).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356.

29) 보건복지부(2024).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357.

30) 보건복지부(2024).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357.

31) 교육부(2018).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 공공성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 혁신 방안. p.20.

32) 관계부처합동(2023). 제3차(2023-2027)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p.8.

록 규정하고 있어서 지역이나 기관별로 운영시간 등이 상이한 실정이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2023~2027)’에 의하면, 2025년부터 모든 시·도에서 참여대상을 희망 유아로 확대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를 인상하며, 서비스 질의 제고를 위해 방과후 과정 운영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돌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하는 등을 현장 지원을 강화하여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sup>33)</sup>.

한편 인구 변화에 따라 지리적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에서는 ‘소규모 유치원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다<sup>34)</sup>. 즉, 농촌지역의 교육 여건을 고려한 1~2학급 도서형, 연령별 학급 운영이 가능한 3학급 거점형, 4학급 이상 준단설형 등 인구 밀집 및 도서지역 등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소규모 유치원 지원 모델의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사회 연계 방과후 과정 운영 모델의 확산도 추진된다. 방학 중 방과후 과정 인력을 구하기 힘든 농어촌 등 소규모 유치원과 지역내 다양한 기관간의 방과후 연계 운영 모델을 발굴하여 확산할 계획이다<sup>35)</sup>. 즉, 지역사회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기관,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를 활성화하여 거점 유치원 등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라. 학교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초등학생 자녀 대상

### 1) 학교 돌봄: 늘봄학교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확정한 ‘초등 전일제 교육’<sup>36)</sup>에 따라 지난해 1월에 늘봄학교를 통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다. 동 계획에서는 그간 맞벌이 가구 등의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 왔으나, 이들 중에서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부모의 선호도가 가장 높다는 점에 주목하였다<sup>37)</sup>. 그러나 초등돌봄교실의 한계점으로 운영시간을 17시에서 19시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왔으나, 지역별 학교별로 여건이 상이하어 저녁돌봄을 운영하는 교실의 비율이 30%에 그치는 점을 들었다<sup>38)</sup>. 이에 따라 학교 인력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돌봄(educare)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확산을 추진하였다<sup>39)</sup>.

늘봄학교에서는 운영시간을 오후 8시 까지 연장하고, 긴급하고 일시적인 수요에도 주목하여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고자 한다<sup>40)</sup>. 늘봄학교에서는 아침과 저녁, 방학 돌봄, 방과후 연계 돌봄 이외에도 긴급하게 저녁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17시 이후 돌봄 수용 가능 인원 내에서 ‘일시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본교의 돌봄교실 대기자와 방과후 연계 돌봄 참여자를 우선적

33) 관계부처합동(2023). 제3차(2023~2027)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p.23.

34) 관계부처합동(2023). 제3차(2023~2027)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p.14.

35) 관계부처합동(2023). 제3차(2023~2027)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p.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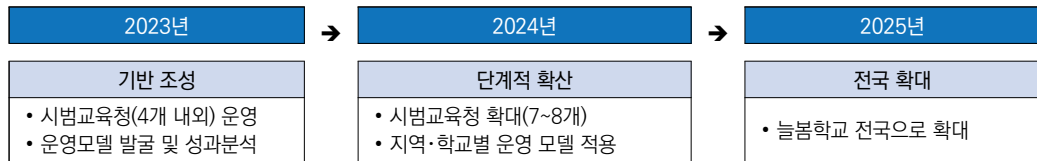
36) ‘늘봄학교 추진 방안’에 의하면, ‘전일제학교’ 명칭에 대해 강제적 활동으로 오해하는 등 현장의 부정적 인식이 있어, 정책 명칭을 ‘늘봄학교’로 수정한다고 밝히고 있다(교육부, 2023: 8).

37) 교육부(2023). 늘봄학교 추진 방안.

38) 교육부(2023). 늘봄학교 추진 방안. p.6.

39) 교육부(2024).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 p.4.

40) 교육부(2023). 늘봄학교 추진 방안. p.14.



자료: 교육부(2023). 늘봄학교 추진 방안(안). p.8.

[그림 4] 늘봄학교 확산 계획(안)

으로 시범 운영하고,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sup>40)</sup>. 이에 따라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서는 분리된 방과후와 돌봄으로 인한 중복 및 사각지대 문제에 주목하여 기존의 이원화된 초등 방과후·돌봄을 늘봄학교로 통합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다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sup>41)</sup> 또한 저녁돌봄 지원 및 안전관리에 강화 방안도 구체화하였다.<sup>42)</sup> 즉, 저녁돌봄시간에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학생에게 석식비 전액을 지원하고, 통학버스 등 학교 밖 안전, 안전인력의 배치, 이동 동선에 따른 CCTV 등 안전 시스템 보강 방안도 제시하였다.

## 2) 지역사회 돌봄: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 가)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0조~제52조, 제54조~제75조에 의거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이며,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sup>43)</sup>.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

다. 어린이집·유치원을 이미 이용 중이더라도 형제·자매와 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시간대를 달리하여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관련 지침에는 우선적으로 돌보는 아동으로 저소득층 가구 이외에도 긴급한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 특례를 두고 있다<sup>44)</sup>. 즉, 보호자의 질병(중증 만성질환, 암 등)으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맞벌이 가정의 아동으로서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기타 가구 특성이나 생활 실태로 보아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 등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면 이하 그림에서와 같이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면 시·군·구는 7일 이내에 서류 검토와 상담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긴급한 상황에서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월~금요일을 포함하여 주 5일, 1일 8시간 이상을 상시 운영해야 하며, 학기 중에는 14시부터 20시까지, 방학(단기 방학 포함) 중에는 12시부터 17시까지의 필수 운영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sup>45)</sup>, 늦은 오후 시간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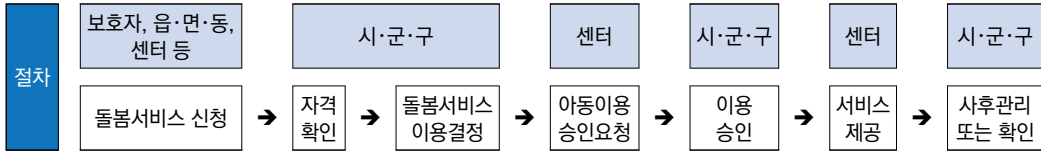
41) 교육부(2024).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p.3, p.6.

42) 교육부(2024).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p.17.

43) 보건복지부(2024).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p.38.

44) 보건복지부(2024).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p.39.





자료: 보건복지부(2024).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p.34.

[그림 5] 지역아동센터 이용 절차

돌봄 공백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역아동센터의 중복이용이 제한되는 경우는 보육료를 지원 받으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학비를 지원 받으면서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등 유사한 목적으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다<sup>46)</sup>. 다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더라도 시간대를 달리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거나, 취학전 졸업반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초등돌봄교실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아동이 시간대를 달리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중복이용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sup>49)</sup>.

또한 타 돌봄서비스 연계에 대해서는 저녁돌

봄 연계 시간대에 초등돌봄교실 이용아동을 충원하고, 지역사회돌봄협의체를 통해 지원내용 등을 협의하는 내용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다.

### 나)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의거하여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내 방과후돌봄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지역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며, 정기·일시돌봄과 등·하원 등을 지원한다<sup>47)</sup>.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초등학생) 아동이며, 입학 전인 만 6세 아동도 이용할 수 있다<sup>48)</sup>. 지역적 특성 및 센터 정원을 고려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의 형

돌봄서비스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아동센터 신고정원 및 운영시간에 맞춰 저녁돌봄서비스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센터의 시설기준과 이용아동 신고정원 내에서 저녁돌봄 연계시간대(16~19시 등) 초등돌봄교실 이용아동 충원</li> </ul> </li> <li>초등돌봄교실 연계 활성화를 위해 학교 등의 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 돌봄협의체를 통해 상세 지원내역(운영비, 프로그램 교구 등) 협의</li> </ul> </li> </ul>

자료: 보건복지부(2024).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p.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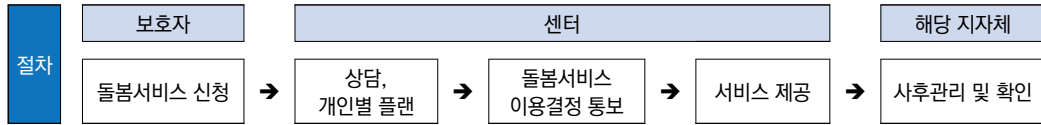
[그림 6] 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 연계 관련 규정

45) 보건복지부(2024).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p.46.

46) 보건복지부(2024).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p.40.

47) 보건복지부(2024). 2024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pp.3-4.

48) 보건복지부(2024). 2024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p.53.



자료: 보건복지부(2024). 2024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p.48.

[그림 7]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절차

제, 자매가 미취학 아동인 경우는 이용대상에 포함된다.

서비스 유형 중에서 일시돌봄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갑자기 발생한 사유에 의한 비정기적 돌봄으로 정의된다<sup>49)</sup>. 일시돌봄 수요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시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일시돌봄 이용아동의 경우에는 당일 등록 및 당일 종결을 원칙으로 하나, 일시돌봄 사유(보호자의 질병, 수술 또는 출산 등)에 따라 5일 이내 연속하여 이용할 수 있고, 이 경우는 일시돌봄 관련 서류를 기간에 따라 1회만 작성하여 보관하면 된다<sup>50)</sup>. 일시돌봄 이용아동은 정기돌봄 이용아동과 별도의 현원으로 관리해야 하고, 동시간대에 정기돌봄과 일시돌봄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가 정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일시돌봄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은 학기 중의 경우 14시부터 20시까지, 방학(단기방학 포함)중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이다<sup>51)</sup>.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 운영이 원칙(공휴일 제외)이므로 하계 휴가 등의 사유로 임시휴원(일명 방학)은 불가하며, 대체인력 활용 등의 사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sup>51)</sup>.

다함께돌봄센터는 보호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센터에 돌봄서비스를 신청(전화, 온라인 등)하고, 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이루어진다<sup>52)</sup>. 센터는 정원 및 현원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자에게 이용 결정을 통보하고, 이후 서비스가 제공된다. 만일, 보호자가 희망하는 센터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과후 돌봄 제공기관(지역아동센터 등) 및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다함께돌봄센터는 타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병행하여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sup>53)</sup>. 예를 들어 2개의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틈새시간 동안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미취학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더라도 취학 전 졸업반인 경우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49) 보건복지부(2024). 2024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p.54.

50) 보건복지부(2024). 2024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p.56.

51) 보건복지부(2024). 2024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p.54.

52) 보건복지부(2024). 2024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p.48.

53) 보건복지부(2024). 2024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p.56.

### 3. 나가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돌봄의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는 다부처에서 각기 다른 운영 기준에 따라 제공되어 있다.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이처럼 기관명이 다르고, 서비스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운영시간 등이 다른 점은 돌봄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불편을 야기하므로 최근 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서비스 연계와 부처 간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에 맞추어 이들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질병감염의 우려 등으로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원활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일괄된 지침이 요구된다. 또한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돌봄의 공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학교와 지역 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사회내 돌봄 서비스 기관이 원활하게 연계하는 체계를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시스템과 이용자 및 돌봄인력 관리 시스템이 사업별로 별도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용가구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연계에 따른 이용자 관리 등이 원활하려면 업무관리시스템을 연계하거나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아동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긴급 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을 보장하려면 영유아와 초등자녀를 포괄하는 통합적 돌봄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기관을 원활하게 연계할 수 있는 통합돌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여기에는 특히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다기능 복합시설이나 통합연령 돌봄서비스 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